#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1

저작자의 표시 성명 : 허유정 이명(필명) : 메이허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허유정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요즘 챗GPT 활용법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u>메이허</u>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거나 종이책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사'라고 함) <u>골든래빗 주식회사</u>는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발행을 위한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전송(傳送):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sup>1</sup>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책 및 종이책을 동시에 제작하기 위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7.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 8. 등록: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 9.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 10.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 1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 12. 계약의 해지와 해제: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 1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설정)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설정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의 등록)

-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발행사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과 저작물을 전자책 등으로 복제·배포하는 것과 복제·전송하는 것(이하'발행 등'이라고 함)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또는 종이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기간)

-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 ① 저작권자는 2024년 08월 30일까지 위 저작물의 발행 등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인쇄 방식에 의한 발행물에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V)]

합의한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및 비용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하거나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출판을 제외한다)에 따른 이용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V), 구독 방식(V)]

■매체 형식 : [전자책(V) / 오디오북(V)]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매출액이 <u>10만</u>원 이하 또는 6개월 동안 판매량이 <u>50</u>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 제14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지급하는 인세에는 원천 징수액이 포함되므로 원천 징수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인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체는 부가세가 원천 징수액에 포함된다. 각 세율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024년 5월 현재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 부가세는 10%이다.

### 도서정가의 **9% ×** 판매부수

# ■ 공중송신 총 수금액의 15%

## ② 이차적 사용

- a. 이 저작물을 해외판권수익, 오디오북, 온라인 강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타 형태나 방법으로 발행사 또는 제3자가 이차적 저작물 개발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발행사에게 위임하고 발행사는 구체적 조건을 저작권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b. 이 저작물을 제3자가 이차적 저작물 개발에 사용할 경우 발행사는 이차적 저작물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출액에서 콘텐츠의 이차적 사용을 위해 발행사가 지불한 관리 비용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50%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c.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14조 ①항에서 산출된 금액에서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총액 중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d. 이 저작물을 발행사가 직접 이차적 저작물 개발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과 발행사는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협의해 지급액과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 ③ 발행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발행부수 및 판매부수를 포함한다)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15조 (선급금)

- ① 발행사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mark>일백만</mark>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 제16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 ① 출판사는 초판(개정판) 1쇄 발행 시 10부, 중쇄 발행 시 1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u>70</u>%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때 저작권자가 개별 배송을 원하면 택배 발송료의 <u>50</u>%씩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각 부담한다.

### 제17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8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판면파일을 포함하며, 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사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구매하여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2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제22조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6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3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24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

-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26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한다.

### ■ 특약 사항

- 1. 인세 정산은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7월과 1월에 지급한다.
- 2. <u>완전원고 이전 단계에서 해지/해제의 귀책 사유가 있는 측이 선급금을 30일 이내에 배상한다(출판사측에 책임이 있으면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저작권자에게 있으면 선급금을 배액</u> 배상한다).
  - a. <u>완전원고 완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원고 입고일이 늦어지면 저작권자에 귀책 사유가 있는</u> 것으로 판단하여 출판사가 해지할 수 있다.
  - b. <u>해지/해제된 도서의 원고를 저작권자가 사용할 때는 출판사가 기여한 아이디어, 그림, 문구를</u> 사용할 수 없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전자서명(모두싸인)한 다음 보관한다.

2024년 05월 28일

#### 저작권자의 표시

☑ 개인 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원천세 납부 및 연락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4길 43, 서초극동스타클래스1차

주민번호 : 900411-2048112

이메일 : pythonhur@gmail.com

전화번호 : 010-5198-3567

입금은행명 : 우리은행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주명: 1002-539-103961 / 허유정

성 명 : 허유정 (인)

## 발행사의 표시

발행사명 : 골든래빗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475-87-0158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86, 514호 (동교동,LC타워)

이메일 : apply@goldenrabbit.co.kr

전화번호 : 0505-398-0505

대표자 성명 : 최현우